

2014

연구보고서-9

I S S U E P A P E R

#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수행과제명·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과제책임자·박복순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수행 과제명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과제 책임자  박복순 연구위원

 Tel: 02-3156-7129

 e-mail: pbs0113@kwdimail.re.kr

### 요약

향후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분단 이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도출한 뒤, 통합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복순·박선영·황의정·김명아(2014).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배경 및 문제점

- 분단된 지 70년 가까이 된 오늘날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국가체제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법제에 있어 많은 차이가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주로 정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대비 남북한 법제의 간극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통합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가 존재하였지만, 여성·가족 관련 분야의 경우 통일대비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음. 또한 소수 존재하는 통일대비 여성 관련 북한 법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1990년대 중반 이전의 법제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북한 여성 관련 법제들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이후 1998년 「사회주의 헌법」개정을 필두로 1999년에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로동법」 등이 개정되었으며, 2009년 개정 「사회주의 헌법」에는 북한 최초 ‘인권보장 조항’(제8조)에 대한 명문규정이 신설됨. 또한 2010년에는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로동보호법」 등이 새로이 제정되어, 이전에 비하여 여성 및 아동 권리의 법적 보장이 강화됨.
- 남한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많은 여성 관련 입법이 제·개정됨. 최근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변화, 「민법」상 호주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추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 통일 단계에서 여성 관련 법·제도를 성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히, 북한의 여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필요성에서 본 연구는 통일대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가 분단 이후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보고, 현행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 분석 및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비교를 통해 남북한의 공통점과 상이

점을 도출하여 향후 예상되는 통일에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조사 및 분석결과

### 가.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

- 분단 이후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그에게 미친 영향이 컸던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간극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음.
-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전개과정은 다섯 시기로 구분됨.
  - 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 전개과정에 있어 첫 번째 시기는 1945년에서 1950년까지로 광복 후 남녀평등원칙의 명문화와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가 이루어진 시기임. 1945년에서 1946년까지 기간에 북한은 사회주의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제잔재를 퇴치하고 봉건적인 유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함.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은 여성에게 남성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어 남녀평등한 경제력의 근간을 마련함. 북한 노동법의 기초가 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1946)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산전산후 휴가제도, 임신부의 특별한 보호 등을 규정하여 노동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줌.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1946)은 북한에서 최초로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평등에 대한 법적 보장을 마련함. 또한 1947년에서 1950년까지는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를 시작한 시기임.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돌입하기 위하여 북한은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집중하였고, 이를 위한 여

성의 노동자화를 전개함. 「조선민주주의 헌법」(1948) 제정이 있었고, 이 헌법에서 남녀평등권 일반, 남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국가의 모성보호, 혼인과 가정의 보호 등을 규정함. 무엇보다 「탁아소에 관한 규정」(1949), 「산원에 관한 규정」(1949), 「여성 상담소에 관한 규정」(1948)을 제정하여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를 뒷받침함.

- 두 번째 시기는 전후에서 1971년에 이르는 시기로, 전쟁이후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군 병력 유지의 어려움에 마주하자 북한은 여성의 출산 및 노동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무한 동시에, 이혼의 자유를 억제하는 등 가족중심주의의 경향을 강화함.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46),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을 전국가적, 전국가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잘꾸리며 어린이들의 보육교양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1968),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 건설을 균중적 운동으로 벌리며 어린이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 잘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1969), 내각결정 「탁아소, 유치원들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줄데 대하여」(1971) 등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여성해방과 더불어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위해 모든 유아와 아동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입법들임. 반면, 내각결정 「리혼절차를 일부 변경할데 관하여」(1956)는 기존의 협의이혼제도를 폐지하고 이혼은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법성규칙 「리혼사건심리절차에 관한 규정」(1956)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여,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회귀함.
- 세 번째 시기는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사회주의 헌법’이라 한다) 채택을 기반으로, 북한의 국가체제를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가 결합한 형태로 정비한 시기임. 대략적으로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아우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음. 여성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노동과 가정에서의 노동이라는 이

중적인 역할 부여를 공고화한 것이 특징임. 197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주체사상을 체계화하여 확립하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추대함. 김일성의 주체사상 원리를 헌법의 국가지도 이념으로 명시하여 「사회주의 헌법」(1972)이 탄생하였으며, 이 헌법에서 ‘가정의 공고화’를 규정함. 이를 이어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사회주의로동법」(1978), 「민사규정」(1982) 등을 제정하면서 법제 정비를 함. 이러한 법령들에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 모성보호, 탁아소 및 유치원의 보편화와 같은 내용들이 규정되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후계체제 정립에 따른 가부장제적 국가-가족 개념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매우 강조됨.

- 네 번째 시기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시기로 가족중심주의가 한층 더 강화된 시기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붕괴를 목격한 북한은 1992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우리식사회주의’,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내세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여성의 권리 보장에 대한 후퇴를 보임. 1990년 제정된 「북한 가족법」 또한 가정의 공고화 및 가족중심주의를 확인함. 이후 몇 차례 「북한 가족법」이 개정되어 자녀양육비에 있어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의무 규정, 친권, 후견, 상속 등과 관련된 보완 및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음.
  -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북한은 2010년에 「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후퇴시켰던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임. 이는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여성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 전개과정은 네 개의 시기로 구분됨.
- 남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 전개과정에 있어 첫 번째 시기는 해

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 여성정책이나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 두드러진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여성의 고용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이것이 여성입법으로 나아가지는 않음. 이 시기의 여성 관련 법제는 윤락여성, 저소득층 여성, 미혼모 등 요보호여성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부녀복지의 성격을 넘지 못하였음.

- 두 번째 시기는 198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여성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기간으로 볼 수 있음. 여성문제에 대한 관점이 요보호여성이나 부녀복지 차원을 벗어나고, 근본적인 여성을 위한 법제들이 논의된 시기임. 1980년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당시 제34조제1항)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1987년 「헌법」은 여성근로자의 양성평등과 모성보호(제32조제4항), 여성의 복지와 권의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제34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있어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제36조제1항)을 신설함. 1987년에는 고용 전반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며, 1989년에는 모자가정의 자립과 복지를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됨. 또한 여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개발원법」(1982),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규정」(1983) 등이 제정되기도 하였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임용시의 성별 구분 폐지(1989) 등의 변화도 있었음.
-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에 걸쳐 여성입법이 확대되고, 이것이 나아가 양성평등 입법으로 발전된 시기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성운동, 여성정책, 여성 관련 법의 제·개정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여성 관련 법제의 발전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향상됨. 가족(「민법」, 「국적법」개정), 노동(「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개정), 정치(「정당법」개정), 사

회보장(「영유아보육법」개정),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구제수단(「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전 영역에 있어 여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짐. 더욱이 1995년에는 유엔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가 채택되면서 남한에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여성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으로의 개념 전환이 이루어짐.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시행된 개정 「민법」에 의하여 전통적인 부계혈족주의에 바탕을 둔 친족 개념이 양성평등에 입각한 부모양계친족개념으로 전환되고, 강제적 신분상속인 호주상속 대신 호주승계제도로 전환되는 등 큰 변화가 이루어짐.

- 네 번째 시기는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오늘날 여성 관련 법제는 성 주류화에 입각하여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관점을 취하고 있음. 유엔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 이후 새 패러다임이 입법 영역에 뚜렷이 반영된 것은 2003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성 주류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택하면서부터임. 이러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에 있어 중대한 변화 및 확장은 여성부 신설(2001), 「남녀고용평등법」개정(2001, 2005, 2007, 2010, 2012, 201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200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정(2008), 「아이돌봄지원법」제정(2012) 등에서도 나타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200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2004)과 더불어 2012년 11월 22일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법」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이 개정되기도 함. 가족 영역에 있어서는 2005년 2월 3일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와 가족의 입적제도가 폐지

되고, 가족의 범위와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개정, 친양자제도의 신설에 관한 개정이 시행됨. 그 외 「건강가정기본법」제정(2004),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2007, 구 「모자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200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2014) 등이 있었으며, 특히 성 주류화의 관점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시행(2006년 「국가재정법」제정으로 기틀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2011) 등 변화가 이루어짐.

- 북한은 정권수립 초반에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이고 압축적으로 여성·가족 관련 법제를 개혁하여 남한의 정권 수립기와 대조됨. 그러나 이후 국가 가부장제를 결합시킨 정권세습과 사회주의 국가책임을 가족책임으로 전가하는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여성·가족 관련 법제를 퇴보시킴.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등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가 조금 보완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남한은 1970년대까지 여성관련 법제가 부녀복지 차원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0년대 이후 시민사회운동의 성장과 국제사회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등에서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가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제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오늘날에는 입법의 성 주류화를 추구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오늘날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발전양상은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과 그 구체적 실현 수단 마련의 측면에서 차이가 큼.

## 나.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현황

- 다음으로 현행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양성평등 관련, 여성노동 관련, 여성폭력 관련,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가족 관련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으로 나누어 살펴봄.
-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헌법상 일반적 평등권과 양성평등권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체법으로서 「여성권리

보장법』등을 두고 있는 반면, 남한은 헌법상 일반적 평등권과 개별 평등권들(고용상 성차별금지, 사회보장, 양성평등한 가족질서규범 등)을 통해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실체법을 대신하여 헌법과 여성 관련법의 중간법의 지위를 가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존재함.

-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일반적 평등원칙을,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를 가진다”(제77조)고 양성평등원칙을 규정하고, 그 외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제66조)를 규정함.
- 양성평등 관련 법률로는 북한이 최초로 전 생활영역에서의 남녀 평등권에 대해 규정한 『남녀평등권 법령』이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오늘날까지 매우 중요한 법으로 기념되고 있으며, 『녀성권리보장법』은 기존 법령의 여성권리 및 보호 규정을 재확인하면서 여성권리 보장을 보다 구체화하였음.
- 남한은 『헌법』 제11조제1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제32조제4항에서는 여성의 근로 보호 및 고용에서의 성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6조제1항에서는 양성평등한 가족질서규범을 규정하고 있음.
- 양성평등 관련 법률로는 실체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상응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으며, 이 법은 『헌법』과 각 분야의 개별법들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법으로서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에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입법과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정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목표와 시책의 범위 등을 규정하여 양성평등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기본법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2015년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

- 나아가 남한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게 하여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두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 등도 두어, 북한과 달리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있음.

- 여성노동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사회주의로동법」, 「로동보호법」에서 국가의 여성근로자들이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온갖 조건 보장,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부담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인 것에 반하여, 남한은 전체 근로자의 보호 속에서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특화시키는 방식을 넘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사회주의로동법」은 우선, 근로자로서의 일반 여성들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들이 일하는데 편리하게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편의시설을 꾸려야 하며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여성들이 희망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가내작업반, 가내협동조합 등을 조직하여야 한다”(제31조), “국가는 근로자들의 어린이들을 현대적인 설비를 갖춘 탁아소,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71조)”고 규정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규정함.
- 둘째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으로서, “국가는 여성근로자들의 로동보호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제59조제1항)”,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로동보호위생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제59조제2항)”, 그리

고 “여성들에게는 힘들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시킬수 없으며... (제59조제3항전단)”라고 규정함.

- 셋째로, 산부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으로서, 젖먹이 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노동 금지(제59조제3항후단), 특수한 조건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제16조제2항, 8시간의 근로시간을 7시간 또는 6시간으로 단축 가능), 3명 이상의 다자녀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제16조제3항, 6시간으로 단축), 근속연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 보장(제66조) 등 규정함.
- 여기에 「노동보호법」은 탁아소, 유치원 설치를 해당기관과 기업소, 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의 보호와 출산한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며,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해노동금지 등 여성노동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조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반면, 남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여성노동 및 모성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고용상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금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규정함.
- 전반적인 규율 내용은 북한과 유사하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북한의 법령에서 찾을 수 없는 직장 내 성희롱 규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담고 있음. 그 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등을 두어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두고 있음.
- 여성폭력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주로 「형법」에서 관련 범죄 처벌을 규정함에도 여전히 여성폭력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에 비하여, 남한은 「형법」외 다수의 특별법을 두어 여성을 보호하고 있음.
- 북한은 여성폭력 가운데 성폭력과 성매매범죄는 「형법」에서, 성희롱과 유사한 ‘여성 희롱’ 행위는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에서, 가정폭력범죄는 「여성권리보장법」에서 각각 규율하

고 있음.

- 북한 「형법」 제249조는 “매음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 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성매매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 1950년 북한 제정 「형법」은 성매매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74년 개정 「형법」에서 이를 삭제한 이후 2004년 개정 「형법」제261조 ‘매음죄’로 신설됨(2009년 제249조로 개정)임.
- 또한 2012년 개정 「형법」에서는 “매음행위를 한 자”라고 하여 “여러 번”을 없애고 성매매행위자에 대하여 1년이 감경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형과 성매매행위자의 행위 내용을 개정함과 더불어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기존 “여러 번” 또는 “상습적으로” 한 자를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였던 것에서 법정형을 높임.
- 북한 「형법」 제279조는 “폭행, 협박하여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을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운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남한의 경우인 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그리고 강간치상 및 강간치사까지도 한 조문에서 규율함.
- 북한 「형법」 제280조는 복종관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여성을 위력에 의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처벌 규정(남한 「형법」 제303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북한 「형법」제 280조제2항 이하의 경우는 남한 「형법」이 규율하고 있지 않은 부분으로 가해자가 복종관계에 있는 여러 여성들을 강요하여 성관계를 가졌거나, 피해 여성이 타락 또는 자살하게 된 경우까지도 처벌하고 있음.

- 북한 「형법」 제281조는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15세 미만, 즉 14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어, 남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점과는 차이가 있음.
- 한편, 현행 북한 「형법」상의 여성폭력과는 무관하지만, 통일대비 통합법제 논의시 쟁점이 되는 부분으로 남한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남한 「형법」제241조)과 비교할 만한 규정으로 북한 「형법」제257조 ‘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처벌 규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 제257조는 “탐욕 그 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하여 중혼 및 가정파탄에 대해 처벌하고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여성권리보장법」은 여성의 인신의 불가침권, 여성 매매·강간·윤간·매음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특히 가정폭력 금지에 대해 선언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같은 교양사업 실시에 관해 언급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그 외 「인민보안단속법」에서 여성 희롱행위를, 「행정처벌법」에서 ‘불량자적행위’ 및 부모·시부모·계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현행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낙태금지 및 허용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에서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만 밝혀, 「형법」상 낙태 처벌 규정을 두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남한에 비하여 북한이 문구상으로는 앞선 듯이 여겨짐.
-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가 조문명을 ‘출산의 자유’라고 한 뒤,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고 하여 ‘낙태자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음.

- 반면, 남한은 「형법」에서 낙태죄 처벌 규정(제269조)을 두고 있고, 또한 「모자보건법」에서 낙태허용범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 대하여 제14조에서 “의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즉,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항) 등이다. 제1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가족관계 규율 관련 법령의 경우, 남북한은 전통에 근거한 유사한 내용이 많으나, 북한은 독자적인 「가족법」과 「상속법」을 두고 있어 남한과 법형식상 차이가 있음.

- 더욱이 북한 「가족법」은 ‘가정의 공고화’라는 국가 목적을 위한 통제가 가능한 장치로서, 사회법적 또는 공법적 성격이 강한 것에 반하여, 남한은 개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

안에 두어 가족관계 규율을 사적 영역으로서 다루고 있음.

- 법률용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남한의 경우 ‘혼인’이라는 용어를, 북한의 경우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임.
- 약혼에 대해서는 북한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남한은 약혼과 약혼해제의 자유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북한은 자유결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혼연령은 비록 남자 18세, 여자 17세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그 최저연령을 민사행위 능력자인 17세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결혼의사만으로 결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음.
- 반면, 남한은 결혼연령은 남녀 모두 18세로 규율하면서, 미성년자의 결혼에 친권자의 동의를, 피성년후견인의 결혼에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 남북한은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남한은 북한과 달리 인척을 계원에 따라 6촌까지 확대함으로써 금혼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음.
- 남북한 모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남한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무효인 결혼으로서 재판소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효과면에서 차이를 보임.
- 남한은 동성(同性)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 문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북한에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동성결혼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한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재판이혼만이 가능한데, 더욱이 북한은 재판이혼을 통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3개월 동안만 부여하고 있으며, 이혼의 효력발

생은 신분등록을 하여야지만 발생하도록 하고, 이혼절차가 개시 되는 상담부터 이혼판결 이후에도 등록할 때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을 뒀으로써 가정의 해체를 막는데 주력하고 있음.

- 북한은 자녀문제에서 사회주의 건설에 없어서는 안 되는 혁명 세대로서 중요한 역할의 수행할 미성인 자녀의 양육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어, 이혼시 양육자 설정 및 양육비 분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3살 미만의 자녀의 양육자 지정시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 미성년자녀의 입양만을 인정하면서 완전입양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 계자녀와 계부모의 관계에서도 인척관계가 아니라 법정친자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고려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짐.
- 남한은 계부모는 계자에게 혈족의 배우자, 계자녀는 계부에게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각각 인척 1촌 관계를 인정받고, 법정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입양이라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북한은 계자녀와 계부모의 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함.
- 양자제도에 있어 남북한 모두 미성년자를 위한 친양자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남한은 그 외에 일반양자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대한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한편, 또한 입양을 승인하는 중앙당국으로 북한은 주민행정기관을 지정하고 있고, 남한은 법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북한은 소속 시조 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본(本)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나, 남한은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또한 자녀의 성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두드러진 차이는 남한은 북한과 달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의 성본 변경의 가능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부자동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남한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 및 배우자간의 부양의무는 생활유지형 부양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북한 「가족법」은 부부간의 부양(제19조)과 친자간의 부양(제28조)을 인정하고 있고, 제2차적 부양의무인 조건부 부양으로 조부모와 손자녀간(제35조), 형제자매간(제36조)의 부양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남한에서는 후견제도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다루며, 특히 성년후견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최근 개정이 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은 남한의 후견제도가 개정되기 전의 모습과 유사함.
- 상속에 있어서는 남한은 「민법」의 상속편으로 규율하고 있는 내용을 북한은 「가족법」외에 「상속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순위, 상속분,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습상속, 유언상속, 상속분쟁의 해결을 둘러싸고 차이가 있음.
- 가족지원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사적 부양만으로 가족기능이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국가의 사회보장지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는 가족을 정책대상으로 삼기보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개인 중심의 지원책에 머무름. 반면, 남한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가족기능 수행의 다양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들이 존재함.
-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법령의 경우, 북한은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국가부담의 어린이 양육을 헌법상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헌법적 요구는 아니나 일·가정 양립 지원의 대상을 여성에게 국한시키는 것을 넘어서 전반적으로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회주의 헌법」 제77조는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특별 보호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는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보육교양법」은 북한의 탁아제도 전반에 걸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법률로, 북한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보육제도를 한데 모아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보육교양법」의 특징으로는 첫째, 보육의 사회화, 즉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둘째, 보육의 사회화가 부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양육에서 부모의 자유보장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을 통해 양자간의 균형을 꾀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들을 양육의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고, 여기에 더 나아가 어머니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반면, 남한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일·가정의 양립 지원과 관련하여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그 밖의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 3 정책제언

#### 제안1) 남북한 여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 가. 양성평등 관련 법령

- 남북한 여성·가족 관련 법제 통합 시, 헌법 상 일반적 평등권과 별

도로 양성평등권을 독립 규정으로 추가하여, 양성평등이 헌법적 질서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을 국가의 목표로 명시할 필요 있음.

-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경우, 실체법이 없는 상태에서 양성평등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들이 존재하는 것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남한만의 특성이므로, 통합 시 실체법으로서 「남녀평등법」 제정이 필요함.

## 나. 여성노동 관련 법령

- 남북한 헌법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북한은 모성(어머니)에 대한 보호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음. 반면, 남한은 여성의 모성뿐 아니라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통해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여성의 공적 세계로의 진출을 어머니에 대한 보호를 중심으로 하려는 것은 여성에 대한 보호가 아닌 어머니에 대한 보호로, 결국 여성을 어머니로 고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시 어머니에 대한 보호가 아닌 남한과 같이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법령 속에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두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 여성폭력 관련 법령

- 여성폭력 관련 법제에서의 남북한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북한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주로 「형법」상 규율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독자적인 형태의 특별법을 두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제정된 「녀성권리보장법」상 가정폭력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규정 외에는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음. 반면, 남한의 경우 성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범죄 처벌은 「형법」과 각각의 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 처벌은 특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의 여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각각 존재함.
- 법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향후 통합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율도 필요함. 북한의 ‘여성 희롱’ 행위로 규율되는 성희롱 개념과 남한의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규제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 성폭력범죄 행위의 객체(북한은 ‘여성’만을 객체로 인정), 법정형, 범죄 유형의 통일 등이 필요함. 성매매 관련해서는 범죄유형과 그에 따른 법정형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 가정폭력은 남북한 법상 가정폭력피해자 범위의 차이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라. 여성 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령

-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북한은 낙태금지 및 허용범위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녀성권리보장법」상 여성의 출산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반면 남한은 「형법」상 낙태 관련 처벌 규정을 두면서 「모자보건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공임신중

절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남북한 여성건강 및 재생산권 관련 법제통합 논의시 남북한의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인식 및 제도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보다 먼저 남한의 현행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이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야 함.

## 제안2) 남북한 가족 관련 법제 통합의 기본방향

### 가. 가족관계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

- 가족관계 규율 및 가족지원 관련 법령의 경우, 세부적인 차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 ‘가족법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 헌법상에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남한과 달리 북한은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독자법인 「북한 가족법」의 총칙에 규정하면서 가정의 공고화를 통한 사회주의대가정의 건설이라는 법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고, ‘어머니의 보호원칙’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 극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법규정을 통해 성별고정관념이 더욱 고착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함.
- ‘결혼의 성립과 해소’와 관련하여 남한은 법률용어로서 ‘혼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고, 결혼의 성립조건에 있어서도 남북한 모두 자유결혼(결혼의사의 합치), 중혼 금지(일부일처), 결혼연령, 근친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통합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함.
- ‘부양’과 관련하여 남한은 「민법」친족편 제7장에서 독립된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노동능력이 없는 자의 부양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책임을 각각 해당하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일대비 가족법 통합 논의에서는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후견’과 관련하여 남북한 모두 행위능력이 부족한 자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후견제도를 두고 있지만, 향후 남북한 통일대비 논의에서의 기본방향은 고령화사회, 더 나아가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
- ‘상속’과 관련하여 현재 통합과정에 이르기 전의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한에서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남한의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 제도는 북한 가족의 상속권이나 대습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으며, 실령상속권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북한 반출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속에서 생활비 정도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속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되고 있음. 따라서 통합과정에서의 상속문제 또한 남북한 상속 규정의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나. 일·가정 양립지원 관련 법령

- 북한은 일찍부터 여성의 사회주의 근로자화를 위해 「사회주의 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등을 통해 여성을 양육 부담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였고, 남한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 남북한의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상이한데, 향후 남북한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통합의 기본방향으로는 우선, 현행과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안에 일·가정 양

립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단독 입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지원 관련 법령도 정비가 필요함.

## 4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정치·경제 관련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여성·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실제 북한의 법제도의 적용 현실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남북한 공감대 형성과 서로를 알기 위한 학술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함.
-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여성·가족 관련 법·제도를 성인지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통일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북한 여성의 권리의식 함양 및 통일법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주관부처 :** 법무부 통일법무과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등